

영 화 업 신 고 증

1. 성명(대표자) : 서종현

5. 영화업의 종류 : 영화배급업

6. 유의사항

가. 신고가 취소되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

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 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화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24 년 04 월 18 일

